



◆ 본고는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pork.or.kr) '양돈법률상담코너'에 게시된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주 ◆



김태욱 변호사

농장부지에 관한 문의

Q 경매를 통해 농장지를 부지를 물색중인데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여기저기 찾던 중 공장용지로 되어 있는 물건을 보았습니다. 어떤 농장은 공장용지에 지어졌던데 그렇다면 공장용지에도 농장을 지을 수 있는건지요? 지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일단 형질변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축산법 제20조에 의하면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돈업의 경우에는 이를 시장,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경매로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가 양돈장으로 등록 가능한지를 관할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문의한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악취방지법을 고려하시어 반경 2Km 이내 민가가 없는 곳으로 양돈장 부지를 선정하시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경매농장 구입에 관한 문의

Q 낙찰 후 농장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재사용이 불가하다 판단되어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기존 시설 대부분을 철거하고 새 양돈장 건물을 지어 올해 11월 준공검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 주인이 경매는 토지와 건물만 받았다고 하며 돈사내부 시설(환기, 급수, 칸막이, 전기시설 등)은 경매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저희에게 무단 탈취 및 임의처분이란 명목으로 형사고발하였으며 담당검사는 이를 받아들여 현재 불구속 수사중입니다. 경매평가서에 건물감정평가요항표의 기타설비란에는 “축사는 내부에 급이·환기시설, 철구조물에 의한 칸막이설비, 소독·급수시설이 되어 있음”이라 써져있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없습니다. 이 기타시설이 누구의 소유인지, 이와 유사한 법원판례가 있으면 알려시기 바랍니다.(형사소송이라 자료확보가 필요합니다)

A 문의하신 돈사내부의 기타시설(환기, 급수, 칸막이, 전기시설 등)은 그 용도가 돈사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이를 중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시설이 경매평가서에도 명시되어 있다면, 귀하가 경매로 돈을 경락 받으면서 기타 시설의 소유권도 귀하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니다. 대법원 판례 1967.3.1 66누176호는 '농지에 부속한 양수시설은 농지의 종물이다' 라고 판시한 예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검사님에게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귀하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귀하에게는 고의가 없었음을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무허가돈사 민원제기에 관한 문의

Q 저는 양돈을 무허가 돈사에서 10년 정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돈사와 주택이 경계선에 있고 약취 및 무허가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주변 사람은 당장 옮기라고 하고 시청환경과에서는 폐쇄명령을 내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정상 1년 정도에 시간이 필요한데 민원과에 합의는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으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큰 도움 부탁드립니다.

A 지금 귀하의 경우 법적으로는 별로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무허가 축사는 철거를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식 절차를 거칠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벌금(흔히 벌금이라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그동안 사용했던 것에 대한 세금입니다)을 내고 양성화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절차는 관할 행정기관에 가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민원에 의해 폐쇄명령까지 내려진 상태라 양성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보돈 구입에 관한 문의

Q 후보돈 구입 당일 후보돈이 설사를 하여 반송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후보돈사와 그 인근인 임신초기사에 설사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후보돈사와 그 인근인 임신초기사로 전파가 된 듯한데 보름 정도 시간이 지나도 후보돈사 관련한 곳만 설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분만사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문제는 질병관련하여 PED와 돈적리 두가지로 검사의뢰한 곳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저희 농장은 PED 보험을 가입상태이며 PED의 경우 저희가 발생하는 손실액 계산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이럴 경우 후보돈 구입처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가장 중요한 점은 귀하 농장의 질병이 과연 구입한 후보돈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가입니다. 문의한 내용을 보면 구입한 후보돈을 즉시 반송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의사에게 의뢰하여 반송 전에 검진을 하던가 아니면 가검물이라도 확보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후보돈을 판매한 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액수는 질병 발생으로 인한 손해 상당액이 될 것입니다. **양돈**